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(백선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1. 11. .

발 의 자 : 백선아,이상기,전용균

김지훈,이창희,신민철

김현택

1. 제안 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 나. 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 다. 안전교육 및 주차구역 지정·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개인형 이동장치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.
 - 2. "이용자"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대여 사업자"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.
 - 4. "도로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,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

에 따른다.

- 제5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개 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 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 - 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 - 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
 - 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,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6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
 - 2.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
 - 3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·계도
 - 4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안전교육 등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
- 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
- 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- 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8조(주차구역 지정·운영 등) 시장은 관공서, 시내버스 정류장, 자전거 주 차장,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주차위반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「도로 교통법」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또는「도로법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0조(이용자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 - 1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
 - 2.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
 - 3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
- 제11조(대여 사업자 준수사항)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

-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·운영
 - 2.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/h 이하(권장)로 조정
 - 3.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운영
 - 4.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·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 위 안내
 - 5.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
 - 6.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
 - 7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3조(위탁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·안전교육 등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14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본 조례안 재정수반요인은 제6조(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), 제7조(안전교육 등) 제8조(주차시설 설치), 제14조(예산의 지원) 등에 전반의 사업비용 등이 해당 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2항 제2호

※ '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'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재정수반요인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관련 조례의 미작성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

4. 작성자

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황규삼